

# 01

FTA 포커스



## 01. FTA 포커스

### I. 중소기업 FTA 원산지관리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희선 한국관세사회 회장

#### 1) 머리말

20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우리나라는 현재 9개의 FTA를 발효한 상태이다. 중국과는 FTA 협상이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한·중·일 FTA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무역 의존도가 큰 우리나라의 경우 WTO 다자간 협상이 부진한 진행 상황이며, 지역경제 협력의 심화를 고려할 때 단기간에 걸쳐 많은 FTA를 체결하여 발효하고, 계속 확대하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EU, 미국이라는 거대 선진 경제권과의 FTA 발효는 그 의미가 크며, 향후 중국·일본과의 FTA가 체결되면 가히 FTA 시대라 할 만하다. 이러한 FTA 시대에 FTA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FTA에 따른 원산지 관리의 문제가 대두된다. 문제는 이러한 원산지 관리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대기업의 경우 많은 비용과 시간, 인력을 투입하여 FTA에 대응하고 있으나 우리 중소기업(대기업 협력업체)은 그러한 준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 2) 중소기업 FTA 원산지관리 현황

FTA 원산지 관리는 원산지판정 기초 정보·자재명세서(BOM) 관리·원산지별 재고관리·원산지증빙자료 관리 등의 적정성에 대한 관리적인 측면이 중요하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원산지판정에 기초가 되는 자료를 관리할 ERP 시스템 등의 부재로 인하여 재고관리가 미흡한 상황이다.

또한, FTA 원산지 관리는 원산지결정기준·관세평가에 기초한 가격결정·HS Code 분류·충분가공 및 직접운송 입증 등의 정확성을 파악하기 위한 전문성이 요구된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다수의 FTA 체결에 따른 복잡하고 다양한 원산지 규정으로 인해 담당자에 대한 교육으로는 전문성 제고가 사실상 어려운 상태이다.

#### 3) 중소기업 FTA 원산지관리 문제점

중소기업은 원산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ERP 및 FTA System 구축이 미비하고, 동 시스템 구축에 따른 고액의 추가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FTA 전문인력 고용 등에 따라 비용부담이 발생한다.

즉, 중소기업에게 FTA 원산지관리는 혜택보다 비용이 발생하는 구조이므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보다는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또한, 정부 FTA 컨설팅 지원사업이 단발성 컨설팅에 그치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중소기업의 FTA 원산지 관리 체계 구축에 부적합하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원산지확인서를 대기업(수출자)에게 발급하는 다단계형의 현행 FTA 원산지관리 체계는 대기업의 수익을 위해 중소협력 업체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측면도 있다.

#### 4) 대기업과 중소기업 FTA 활용 준비 비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FTA 활용 준비 현황을 다음과 같이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가. ERP 운영

대기업은 SAP, Oracle 등 고도화된 ERP 시스템 운영 및 회계 전문가의 직간접 활용을 통해 ERP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대부분은 ERP시스템을 운영하지 않으며 ERP를 이용한 체계적 정보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

##### 나. FTA 원산지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대기업은 고액의 비용을 들여 고도화된 FTA 원산지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많고, ERP와 FTA 원산지관리 시스템을 연계하여 활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FTA 원산지 관리시스템 운영에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효과적으로 FTA 원산지 관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대부분 FTA 원산지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이고, 구축되었다 하더라도 기초 정보가 부실하여 ERP와 FTA 원산지관리 시스템과의 연계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또한, 시스템 운영을 위한 전문 인력이 부족하여 제대로 된 원산지 관리를 기대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

##### 다. 전문가 활용

대기업은 관세사 등 FTA 전문가를 직접 채용하여 원산지관리를 수행하거나, 관세사 등 외부전문가를 통한 직간접관리 형태의 FTA 원산지 관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우, FTA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는 자체직원을 통한 원산지 관리 및 질의응답 수준의 단발성 컨설팅을 통한 FTA 원산지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 라. 비용과 수익구조

대기업(수출기업)은 해외수입자와의 FTA 혜택 공유를 통해 수출액이 증대되고 있으며, 자사 해외법인을 통한 FTA 특혜세율을 직접 적용하고 있다.

또한, 매출액 대비 원산지관리 비용 수준이 미미하여 원산지관리에 부담을 적게 느끼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우, FTA 원산지관리 비용대비 수익이 미미할 뿐만 아니라 매출액 대비 원산지관리 비용 수준이 높아 FTA 활용에 소극적이다.

### 마. 원산지검증 책임

대기업(수출기업)은 하위 벤더들에게 원산지확인서 등의 자료를 받기 때문에 원산지검증이 들어왔을 시 그 책임을 중소협력업체에게 전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시장 지배구조상 중소기업은 그 책임이 과중 될 수밖에 없어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처럼 대기업은 FTA 활용에 대한 준비를 잘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준비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FTA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협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 5) 중소기업 FTA 원산지관리 개선방안

#### 가. 제도적 보완 사항

상기 내용에서 살펴보았듯이 중소기업은 원산지관리에 대한 경제·심리적 부담(검증)만 있고 실질적 혜택이 없어 자발적으로 관리하기보다 수출기업의 공급선 유지를 위해 형식적으로 관리하는 측면이 있다. 또한, 중소업체의 인력구조상 FTA 업무 담당자는 다른 업무와 병행이 불가피하여 원산지관리에 전념하기 힘들고, 잦은 업무변경으로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러한 실태를 바탕으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은 실질적인 FTA 혜택이 없이 비용적인 부담만 안고 있기 때문에 향후 정부 FTA 지원사업 등은 FTA 혜택을 향유하는 수출기업이 원산지관리 비용을 부담하는 “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향후 원산지검증은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하는 국내 중소협력업체가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현재와 같은 관세시스템의 부재 속에서 검증에 대비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로부터 인증 받은 시스템을 이용한 관리 방식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중소기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단발적인 교육만으로는 복잡다양한 원산지관리가 사실상 불가능 하므로, 중소협력기업은 제품생산에 집중하고 원산지관리는 전문가에게 아웃소싱을 맡기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이와 같은 제도적 보완 사항을 바탕으로 중소기업 FTA원산지관리 효율화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 나. 원산지문서 유통/이력 인증관리시스템 도입

FTA 혜택을 향유하는 수출기업(대기업)이 원산지관리 비용을 부담하여 중소기업의 원산지확인서 발급 부담 완화 및 신뢰성 제고하기 위하여 원산지문서 유통/이력 인증관리 방안을 마련해보았다.

상기 원산지문서 유통/이력 관리 시스템의 도해도는 다음 순서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첫째, 자체적으로 원산지확인서에 대한 검토를 수행 할 수 없는 중소기업은 원산지관리 업무를 원산지관리 전문가(관세사)에게 아웃소싱하고, 일정요건을 충족하여 정부로부터 인증받은 원산지관리 전문가(관세사)는 중소기업의 원산지관리 문서에 대하여 인증심사 또는 컨설팅을 수행한다.



둘째, 원산지관리 전문가(관세사)는 FTA-PASS 등 중소기업의 FTA원산지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원산지 문서를 발급하고, 발급한 원산지 관리 문서를 관세청의 “원산지 문서 유통·이력 인증 관리시스템”에 전송한다.

셋째, 원산지관리 문서가 관세청의 “원산지 유통·이력 인증 관리시스템”에 전송되면, 관세청은 “원산지확인 인증 확인인 문언,” “원산지인증 식별부호(QR코드 등)” 및 “인증발급 번호”가 자동적으로 표시(부여)될 수 있도록 관리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이러한 정보는 중소기업청과의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 작업을 통해 중소기업청의 “원산지 유통·이력 인증 지원시스템”에 전송되게 된다.

넷째, 원산지 확인서 등 원산지 문서가 필요한 수출 기업(대기업)은 중기청의 “원산지 유통·이력 인증지원시스템”을 조회하여 원산지확인서를 구매하고, 자사 시스템에서 원산지증명서 작성에 활용한다.

아울러, 원산지관리 문서를 전송한 중소협력업체는 수출업체의 구매수수료에 비례하여 일부를 환급받게 됨으로써 수익자 부담원칙을 실현할 수 있게 된다.

동 방안이 실현된다면, 대·중소기업 간에 혜택을 공유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수출기업(대기업)에서 구매한 원산지관리 문서의 수수료는 FTA 원산지관리업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중소협력업체를 지원하여, 원산지관리업체로 성장을 이끌어 내어 FTA 원산지관리 업무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중소협력업체는 “원산지문서 유통·이력 인증 지원시스템”的 환급 기능을 통한 원산지 관리 비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며, 관세사 등 FTA 전문가에 의한 원산지 관리(Total) 서비스 비용 역시 절감할 수가 있다. 게다가, 전문가에 의한 원산지 관리 문서의 신뢰성 및 원산지 검증 안정성 확보로 FTA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다.



01. FTA 포커스 ...

02. FTA 최근 동향 ...

03. 한·미 FTA 교역 동향과 시사점 ...

아울러, 수출기업(대기업)은 중소기업의 원산지관리 비용부담을 분담함으로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통한 사회적 이미지를 제고할 수가 있고, 관세사 등 외부전문가에 의한 위탁대행 원산지관리로 중소기업 원산지 문서의 정확성에 대한 불신감을 해소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중소기업이 원산지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FTA 수의 향유 수출기업(대기업)이 국내 중소협력업체의 원산지확인서 관리비용을 부담하여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FTA로 인한 과실을 중소기업과 공유할 수 있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형태의 방안이 제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